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연월일 : 2000.9. 21 .

발 의 : 이경진의원외2인

1. 제안이유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군민생활
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4개 읍·면 이상이 공동사용하는 분뇨처리 시설물에 적용
(안 제3조)
- 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명시(안 제4조)
- 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질의회신 사항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마. 기 타 : 없 음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라 함은 당해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환경성 검토서를 참고하여 군수가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 설치하는 4개 읍·면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분뇨처리시설물에 적용된다.

제4조(지역개발에의 반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미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첨』

관 계 법 령 발 체 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질의사항〉

○ 질의요지

-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유사한 사업인 광역분뇨처리장 주변 지원 사업은 상위법에 근거가 애매하다고 하면서 조례제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회 신

-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영향구역 지원촉진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조례이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청소·오물의 수거 처리는 자치사무로서 광역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공공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5조등 관련법률과 자치단체 재정형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임.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 서울 종로 세종로 77
자치운영과 과장 송영근

TEL(02)3703-4854
사무관 배진환

FAX(02)3703-5543
담당자 정명량

문서번호 운영11250- 507

시행일자 1999. 6. 30(년)

받음 강원도 평창군 삼원측량 이경진

제목 질의회신

1. 귀하께서 법제처에 질의하여 저희부에 이송되어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유사한 사업인 광역분뇨처리장 주변지원사업은 상위법에 근거가 애매하다고 하면서 조례제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3. 회신내용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영향구역지원촉진조례는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조례이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에 따르면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는 자치사무로서 광역분뇨처리장관련조례 제정이 일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광역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4조등 관련법률과 자치단체 재정형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창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0374)330-2217 전송 330-2594
처리부서 : 기획실(본관3층) 실장 신대송 담당주사 전완택 실무자 김종환(행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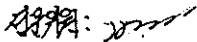
문서번호 기획 16800 - 871

시행일자 2000. 9. 21.

받음 평창군의회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과장

제목 조례발의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서명: 

1. 의사 13130 - 105(2000. 8.31)호와 관련입니다.
2. 평창군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준비에 따른 사전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다 음

1. 분뇨처리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법령상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지원근거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나,
 - 법령해석상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향후 자치사무 수행과 관련한 유사한 지원조례 제정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 혐오시설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임의 규정을 정하는 사안이므로,
2. 조례 제정보다는 주민이 지역개발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사업 순위를 정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끝.

평 창 군



평 창 군 의 회

우232-800/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210-2/ 전화(033)332-2508 / FAX333-7626
 처리과 : 의회사무과 과장 김학근 의사업무담당:이봉현 담당자 최순철

문서번호 의사 13130 - 104

시행일자 2000. 8. 21. (년)

(경 유)

받음 평 창 군 수

참조 기 획 실 장

보존기간		의 장	
공개여부	공 개		
부의장			
과 장	전 결		
		전문위원:	
기안자	최순철	담당 :	협 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의원 조례발의에 따른 사전협의

1.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의회에서는 평창읍 노론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창군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의원발의로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조달의 문제점, 타법률과의 관계등을 협의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1부 . 끝 .

평 창 군 의 회 의 장